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건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39
----------	------

발의년월일 : 2016년 2월 23일
발 의 자 : 신건택·우미경·남창진·김제리
박성숙·김진수·성중기·이명희
송재형·황준환·강감창·박중화
이복근·이숙자·주찬식·박양숙
맹진영·김진철·김현아 의원(19명)

1. 제안이유

지나치게 엄격한 현재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의 거주요건을 완화해 시정 기여도가 인정되는 다양한 인사에 대한 명예시민 위촉을 활성화하고, 일반시민 추천 조건 강화로 후보자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등 명예시민증 수여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거주요건을 완화해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확대함(안 제2조).
- 나. 일반 시민 추천 조건을 강화해 명예시민의 공신력을 강화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와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수여대상) ①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2.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수여대상) ①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p> <p>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p> <p>제3조(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 이상의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p>	<p>제2조(수여대상) ①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p> <p>1.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p> <p>2.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p> <p>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p> <p>제3조(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p>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 미첨부 사유

- 별도의 비용발생 내역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신 건 택